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9월 8일, 박균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9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9.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14.)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16.)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9.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균택의원)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로서, 검사의 수사권 폐지, 새로운 수사절차 관련 의무 신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피해자 면담, 재정신청 관할법원 변경 등 형사사법 절차 개편에 맞추어 다른 법률을 정비하는 한편, 종래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던 특별검사 등의 수사권 근거를 명확히 하여 특별검사 등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4. 대체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의겸위원)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1.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사의 수사규정 정비와 관련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 가.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에 관한 알선 등 금지를 신설함
(안 제46조제3호다목 신설)
- 나.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으로 규정함(안 제46조제3호라목)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6조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으로 한다.

다.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 ----- ----- ----- ----- ----- -----.	제46조(벌칙)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3.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	3. ----- ----- ----- ----- ----- ----- ----- ----- ----- ----- ----- -----	3. ----- ----- ----- ----- ----- ----- ----- ----- ----- ----- ----- -----

		과 같음)
--	--	-------

법률 제 호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 · 중재 · 화해 · 청탁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외국법자문사. 다만, 외국법자문사가 제24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 ----- ----- ----- -----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다.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u>

<u>다. ~ 마.</u> (생 략)	<u>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u> <u>청을 포함한다)에서 취급</u> <u>중인 형사사건</u> <u>라. ~ 바.</u> (현행 다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
----------------------	--